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 관련

■ ‘항소심에 책임을 전가한 이례적 판결’ 지적에 관한 반론

◎ **법률심과 사실심의 역할이 준별되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지적임**

- **제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**이고, **상고심은 법률심**임 ⇨ **사실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**임
- 본 사건에서도, **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적 판단은 법률심인 대법원**의 소관이지만, **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은 사실심인 파기환송심(항소심)**의 소관임 ⇨ **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적 판단까지만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**임
- 본 사건에서 **대법원이 사실상의 유·무죄 판단에 나섰다면 더욱 큰 문제·논란**이 발생하였을 것임 ⇨ **상고심의 사실심 관여로 인한 여러 폐해**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

◎ **증거능력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항상 이러한 방식을 취해왔고 결코 이례적인 판결이 아님**

-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에서 **대법원은 항상 ‘법리만을 선언’**하였고, **당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사실 인정은, 선언된 법리에 따라 항상 파기환송심(항소심)**에서 이루어지게 됨 ⇨ 위에서 본 **“법률심과 사실심의 역할 준별”에 따라 당연**한 것임
- **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, 그리고 피고인 인권 보호에 관하여 중요한 발전·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는 과거 대법원 판결들이 모두 같은 형식**을 취하고 있음 ⇨ **“위법수집 압수물 증거능력 배제” 판결**(2007도3061 판결,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), **“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” 판결**(2002도537 판결) 등
- 위 사건들 모두 **“유죄 부분을 파기하고,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”라고 판결 주문을 선고**하고, **그 이유를 “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”** 라고 판결문에 밝히고 있음 ⇨ 본 사건과 **동일한 형식·구조**임
- 이른바 **“유죄 취지 파기”, “무죄 취지 파기” 등은 모두 사건 관련자들에 의한 추측에 불과**할 뿐,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함 ⇨ **원심 법원이 환송 후에 새로운 증거를 종합하여 환송 전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**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(83도2613 판결), 결국 **사실 인정에 따른 유·무죄의 결론 도출은 사실심에 맡겨져 있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고, 본 사건도 예외가 아님**

■ ‘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결’ 지적에 관한 반론

◎ **증거재판주의, 적법절차원칙에 충실한 판결임**

- “업무상 작성된 문서”라고 모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, 그 중에서 **‘통상문서’에 해당하는 것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**임 ⇨ **통상문서가 아니면 문서의 작성자 자신이 법정에서 자신이 만든 문서가 맞다고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**이고, **대법원도 그에 따른 문제점을**

인식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어쩔 수 없는 것임을 고려해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음

> "1954. 9. 23. 제정되고 1961. 9. 1.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게 해석하여야 하므로,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여는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,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, 초안 문서의 존재,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, 전자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**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, 그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,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.** 이는 **'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'라는 형사법의 대원칙**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."

- **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의 작성이 보편화**되고 있고, 중요한 증거 서류가 컴퓨터를 통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**그 진실성에 대한 음미 없이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에서 기본권의 보장을 후퇴시키는 것**임 ⇨ **본 사건은 이러한 측면을 특히 고려한 '지극히 법리적인' 판결**임

◎ **법원은 종래에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·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과 관련 있는 사안에서는 사건의 정치성·당파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엄격한 판단을 해왔음**

- **과거 국가보안법 사건**에서도 종종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에 관하여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였고, 이러한 경우에도 **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**하였음[99도2317 판결(이른바 **영남위원회 사건**), 2007도7257 판결(이른바 **일심회 사건**) 등] ⇨ 지금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은 **그러한 사건에 관하여도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의문**임
- 위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문서는 모두 업무상 작성된 문서로, 만일 위 사건들에서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**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유죄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**으로 보임 ⇨ 이렇게 **업무 관련 문건을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**할 것임
- **또한 최근 이른바 "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"**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기재된 증거들이 모두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**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**함(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5. 선고 2014고합261 판결) ⇨ 당시에는 **일부 언론에서 법원의 "좌편향성"을 지적·비판**한 바 있음
- 형사소송법 중 **특히 증거능력 분야**는 **매우 정치(精緻)한 법리**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고, **어떤 한 사건에서의 판단이 향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선례가 되어 파장이 클 수** 있으므로 무척 조심스럽게 다루어짐 ⇨ **어느 한 사건의 정치성·당파성을 고려한 판결을 절대로 내릴 수 없는 분야임**
- **철저히 법리에 따라 내려진 판결의 내용**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**정치적으로 공격**한다면 오히려 **정당한 법률 해석에 왜곡**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⇨ 특히 그 대상이 "**최고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관한 법리적 판결"이라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**임. 끝.